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비전임교원의 채용절차, 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용전형) ① 비전임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채용계획) 교무처장은 학년단위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한다.

제4조 (채용공고) 교무처장은 비전임교원을 공개경쟁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5일 전까지 채용분야, 담당교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 채용인원, 자격기준,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

제5조 (인사심의회) ① 각 학부(과)에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학부(과)장이 주관하여 구성한다.

③ 각 학부(과)에 강사 인사심의회가 있을 경우 비전임교원 인사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공개채용

제5조 (온라인지원 및 서류접수) ① 비전임교원 공개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사항 등을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받는다.

② 온라인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공개채용 인사심의회 구성) ① 공개채용 인사심의회(이하 본조 및 제9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해당학부(과) 및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문자연학부의 경우 계열(인문, 자연과학)을 분류하여 구성하며 1/3이상을 타 학부(과)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2.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봉사 등에 대한 심사
3. 면접심사 : 교육자적 자질·열정·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

제9조 (심사절차) ① 심의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8조의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 ② 각 단계별 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심의회에서는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심의회에서는 기초·전공심사에서 5배수 내외로 선발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심의회 위원은 기초심사를 A, B, C, D, E로 평가한 수 B 이상이 과반수이면 적합(P), 과반수 미만이면 부적합(F)로 평가한다.
- ⑤ 심의회 위원은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100점 만점으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하고, “보통”은 80점 미만 내지 60점 이상을 부여하며, “미약”은 60점 미만을 부여한 후 산술평균으로 한다.
- ⑥ 심의회에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도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에서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심의회에서는 면접심사(면접심사 생략 시 전공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3인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부(과)장 및 심의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⑨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비전임교원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⑩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비전임교원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채용

제10조 (특별채용 인사심의회 구성) ① 학부(과)장(연구교수 및 계약제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연구소장 및 연구센터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심의회(이하 본조 및 제11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한다.

② 심의회 구성 및 인원은 공개채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11조 (특별채용절차)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심의회는 특별채용을 위한 국내·외 전공인력풀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학부(과)장 및 심의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비전임교원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임용절차

- 제12조 (임용예정자 통보)** 임용예정자 통보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시스템과 이메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 (임용서류제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계약세부사항)** 비전임교원의 계약관련사항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15조 (임용)**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채용예정자의 계약사항 등을 정한 후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5장 기타

- 제16조 (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내규 제9조 제2항 관련)

심사구분	심사항목	평점 만점	심사방법
기초심사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일치도	P/F	
전공심사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계획,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봉사 등 나.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100	① 기초·전공 심사를 바탕으로 5배수 내외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②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면접심사	가. 전공심사 결과 나.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	100	③ 위원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과반수로 의결

- ※ 기초심사는 위원별로 A, B, C, D, E로 평가한 후 B이상이 과반수이면 P(적합), 과반수 미만이면 F(부적합)로 평가. 다만,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전공 및 면접심사 가능.
-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심사위원별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보통”은 80점미만~60점이상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미약”은 60점미만으로 부여할 수 있음.
- ※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붙임> 신규채용심사표 해당부분에 체크.
- ※ 전공 또는 면접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추천.

<붙임> 신규채용 심사표

OO 교원 신규채용 심사표

성명	소속	전공분야

<기초심사>

심사내용	심사 결과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 분야가 일치하는가? (A, B, C, D, E)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평가결과 (P/F)

<전공심사>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심사내용	심사 결과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계획,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 전가능성, 봉사 등은 우수한 가?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은 우수한가?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평가결과 (P/F)

*강의를 수행하지 않는 비전임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80점미만 ~60점이상, “미약” : 60점미만~**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심사내용	심사 결과					
-전공심사 결과 -교육, 연구 수행능력·열정, 인성 등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평가결과 (P/F)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80점미만 ~60점이상, “미약” : 60점미만~**

심사결과	추천여부 (O, X), 추천순위 ()
-------------	-----------------------------------

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교무처장 귀하